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5. 13 선고 2018가단5222658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D, E, F

변론 종결 2020. 4. 1.

판결 선고 2020. 5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679,055원 및 이에 대한 2018. 9. 12.부터 2020. 5. 13.까지는 연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감정비용을 제외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, 감정비용 중 50%는 원고가, 나머지50%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98,8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

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갑 제1-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은 G감정평가사사무소(감정인 감정평가사 H)에 대한

임료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.

가. 당진시 I 전 1,170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는 원고의 소유이고,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피고가 설치한 통신주가 존재한다.

나. 피고는 2005년경 통신주를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경계가 맞닿아 있는 당진시 J 전 1,917㎡의 소유자인 K과 사이에 그 소유 토지 중 9㎡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통신주를 설치하였고(실제 설치된 바닥 부분의 넓이는 약 2㎡ 정도이고, 13.4m 지상에 약 8㎡ 넓이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다), 2018. 9. 4. 위 통신주를 철거하였다(별지 참고도에 기재된 '쇠전주'는 피고가 설치한 것이 아님).

다.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8. 8. 20.로부터 10년 전인 2008. 8. 20.부터 위 통신주가 철거된 2018. 9. 4.까지의 이 사건 토지 중 9㎡에 대한 임료감정가액은 214,755원이다(실제 점유하는 토지 부분이 다소 부정확하기는 하나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겠다고진술하므로 9㎡를 기준으로 한다).

라.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통신주의 위치 확인을 위한 지적현황측량비용으로 377,300원을 지출하였다.

마. 원고는 이 사건을 인하여 우편발송요금, 유류대, 고속도로 통행료, 기타경비 명목으로 합계 936,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. 위 주장 중 우편발송요금 15,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유류대, 고속도로 통행료, 기타경비는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원고의 아들인 B이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거나 이 사건 관련 조사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취지인데,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당진시 L에 거주하고 있어 원고의 아들에 불과한 B이 사용한 비용을 그대로 원고의 손해로 인정할 수 없고, 나아가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도 없다. 다만, B이 아닌 원고가

직접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거나 조사할 것을 B이 대신하여 일부 비용을 지출했다고 볼 수도 있고, B이 원고의 아들인 점을 감안하면, B이 지출한 비용 중 원고가 지출을 면한 부분은 원고의 손해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, 원고 주장 금액 중 유류대 42,000원, 기타경비 30,000원을 원고의 손해로 인정한다.

6) 이를 계산하면 679,055원(임료 214,755원 + 지적현황측량비용 377,300원 + 우편발송요금 15,000원 + 유류대 42,000원 + 기타경비 30,000원)이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¹⁾인 이 사건 통신주의 무단설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679,05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8. 9. 12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. 5. 13.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(위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).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판사 정동주

지적현황측량 성과도

토지 소재	당진시 [] 2 팔		측척	1 1200
측량지	2018년 6월 21일	측량성과도	2018년 6월 21일	
	지적기사 []	작성지	지적기사 []	

현황 표시

번호	명칭
①	통신주
②	철재전주
이경변간	

연적 표시

지번 부호	연적(㎡)
이경변간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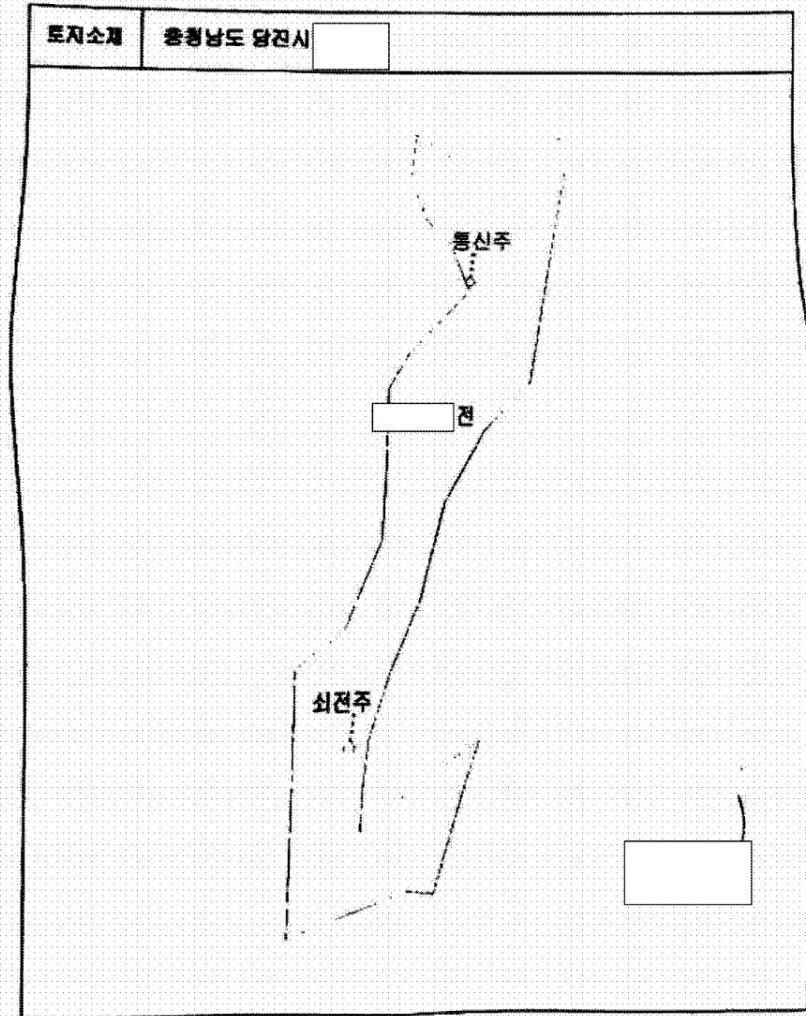
지적현황측량 결과도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.

2018년 6월 21일

한국국토정보공사 아산지점 []

비고	이 측량성과도는 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참 고 도



【참고사항】: 이 도면은 신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도도 축소 또는 확대한 참고용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

1) 이 사건의 사건명은 부당이득금반환이나 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.